

의안번호	제 65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 
조례안

발 의 자	전원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3월 3일

#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

(전원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3월 3일

발의자 : 전원표, 박형용, 이숙애,  
이상욱, 이의영, 장선배,  
허창원

## 1. 제안이유

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(안 제2조)

다.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(안 제3조)

-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

라.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(안 제4조)

- 보훈명예수당, 위문품, 진료비 및 약제비 등

마.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2. 18. ~ 2021. 2. 24.(의회 홈페이지)

##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독립유공자”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“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.
2. “유족 또는 가족”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손자녀(孫子女), 며느리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 대상자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법적 적용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.

**제4조(지원 사업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보훈명예수당 지급
2. 3.1절 및 광복절 기념일에 위문품 지원
3.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

4.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지원 중단 및 환수)**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
2. 지원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
3.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**제4조(적용 대상자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순국선열: 일제의 국권침탈(國權侵奪)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(建國勳章)·건국포장(建國褒章)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2. 애국지사: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·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
**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**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2. 6., 2012. 2. 17., 2015. 12. 22.>

1. 배우자
2. 자녀
3. 손자녀(孫子女). 다만,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.

4.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

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 <신설 2015. 12. 22.>

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, 양자(養子)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. 다만,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,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. 다만,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, 제12조에 따른 보상금(報償金)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,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(先順位者) 1명으로 한정한다.

**제6조(등록 및 결정)** ①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“보훈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③ 삭제 <2015. 12. 22.>

④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.

**제17조(의료지원)**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.

② 독립유공자가 질병(부상을 포함한다)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2.>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2.>

**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**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4. 15., 2012. 12. 18., 2013. 4. 5., 2015. 12. 22., 2016. 1. 6., 2017. 10. 31., 2017. 12. 30.>

1. 「국가보안법」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2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3. 독립운동 공적(功績)에 중대한 흠결(欠缺)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
가. 「형법」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64조의 죄,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,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의 죄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 또는 그 미수죄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·제338조 전단·제339조의 미수죄,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51조(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50조,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63조의 죄

나.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, 제3조제3항 및 제6조(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
다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4 및 제5조의 5의 죄

라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죄

마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

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
바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8조,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
및 제17조제1항의 죄

5.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

6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
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

7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  
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  
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355조부터 제357조  
까지의 죄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 
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## □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함.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보훈명예수당, 위문품,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

### 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4조(지원 사업)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 요인 : 5년간 총 2,554,500천원 정도 소요
  - ※ 보훈명예수당 1,278,000천원, 위문품 316,500천원, 진료비 및 약제비 960,000천원
- 추계의 전제
  -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산출
  - 대상 : 211명(생존 애국지사 1명, 유족 210명)(‘20.12월말 기준)
  -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
    - 생존 애국지사(1명) : 月 300천원, 유족(210명) : 月 100천원
  - 위문품 : 1인당 年 300천원(211명) \* 3.1절, 광복절 각 15만원
  - 진료비 및 의료비 : 1인당 年 600천원(320명) \* 독립유공자·유족 211명, 배우자 109명
- 추계결과 :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2,554,500천원 ※연평균 510,900천원
- 재원조달방안 : **도비**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【 연도별 비용추계서 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2024년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	2,554,500
도 비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	2,554,500
세 출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	2,554,500
시 군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	2,554,500

### <항목별 비용추계>

구 분	합 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합 계	2,554,500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	510,900
보훈명예수당	생존애국지사	18,000	3,600	3,600	3,600	3,600
	유 족	1,260,000	252,000	252,000	252,000	252,000
위문품	316,500	63,300	63,300	63,300	63,300	63,300
진료비 및 약제비	960,000	192,000	192,000	192,000	192,000	192,000